부동산 세법 2	조세총론(2), 취득세(1)	교수: 필립 홍 문 성
	(기본서: P.66 ~ 110)	과정: 심화이론(2주차)

★ 오늘 학습의 혼동되는 중요 지문 완벽정리 하기

- 1. 양도소득세는 【① 소득이 발생하는 때 ② 양도하는 때 ③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】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.
- 2. 취득세는 【① 과세물건 취득하는 때 ② 매년 6월 1일 ③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】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.
- 3.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는 【①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】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.
- 4. 【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지방소득세】는 과세기준일【④ 매년 6월 1일 ⑤ 매년 7월 1일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.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【⑥ 정부가 결정할 ⑦ 정부에 신고하는】 때에 원칙적으로 확정된다.
- 5.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 또는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는 경우의 제척기 간은 당해 국세(상속세, 증여세 제외)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【① 15년 ② 10년 ③ 7년】 간으로 한다.
- 6. 지방세(5천만원 미만)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【① 3년 ② 5년 ③ 10년】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7. 국세의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)로부터 【① 90일 ② 60일】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- 8.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과세권은 【① 특별시·광역시·도 ② 시·군·구】에 있으며, 재화의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【③ 유통세 ④ 행위세 ⑤ 수익세 ⑥ 응능과세 ⑦ 응익과세 ⑧ 보유과세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.
- 9. 취득세 과세대상은 【① 부동산 ② 차량 ③ 선박 ④ 기계장비 ⑤ 광업권】등이 해당한다.

★ 객관식 문제의 완벽정리

10.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 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다.
- ②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하는 때에 확정된다.
- ③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.
- ④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 의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.
- ⑤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 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.

11.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조세는 모두 몇 개인가?

① 재산세

- ① 양도소득세
- ⓒ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
- ② 취득세

⑤ 등록면허세

田 종합부동산세

- (1) 27H (2) 37H (3) 47H
- ④ 5개
- (5)67}

12. 조세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·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.
- ②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.
- ③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국세의 경우 일정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정기간(5년)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④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이 적용된다.
- ⑤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천만원 이상 의 채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- 13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?
- 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
- 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
-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
- ④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
- (5)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
- 14.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. 다만,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. 그 에 해당하는 세목은?
- 양도소득세

② 종합소득세

③ 종합부동산세

④ 취득세

- ⑤ 등록면허세
- 15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.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?
- ① 지방세 ➡ 가산금 ➡ 체납처분비
- ② 체납처분비 ➡ 가산금 ➡ 지방세
- ③ 가산금 ➡ 지방세 ➡ 체납처분비
- ④ 체납처분비 ➡ 지방세 ➡ 가산금
- ⑤ 지방세 ⇨ 체납처분비 ⇨ 가산금
- 16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이악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④ 이의신청,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. 다만,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,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.
- 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17. 취득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🗇 유통세
- © 응능과세
- ◎ 신고납부
- △ 표준세율
- ② 응익세
- ③ 초과누진세율

- ℂ 보통세
- ② 사실주의
- 🗎 형식주의
- ⊙ 행위세
- ② 차등비례세율
- (E) 면세점

- ① 7개 ② 8개 ③ 9개
- ④ 10개 ⑤ 11개

정답

$$1 - 3 \qquad 2 - 0 \qquad 3 - 2 \qquad 4 - 0, \ 2, \ 4, \ 6 \qquad 5 - 2 \qquad 6 - 2 \qquad 7 - 0 \qquad 8 - 0, \ 3, \ 4, \ 6$$